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8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이병진 · 문대림 · 윤준병
한정애 · 김태선 · 소병훈
문금주 · 최혁진 · 송옥주
남인순 · 이재관 · 이주희
임미애 · 이상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버섯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채식 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임.

하지만 버섯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분산되어 있고 표준화된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버섯의 품질관리, 버섯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버섯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지의 원료, 제조 시설 및 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확 후 배지를 퇴비, 사료, 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 구매시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등의 급식재료 구매 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 소비촉진,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버섯산업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버섯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유통, 배지 수급, 연구개발 등 버섯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섯”이란 양송이, 느타리, 표고, 영지, 팽이, 새송이, 송이, 목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균류를 말한다.
2. “버섯가공품”이란 버섯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3. “종균”이란 버섯의 균사체로서 재배를 위하여 배양한 균을 말한다.
4. “버섯산업”이란 종균 배양이나 버섯의 생산·가공·포장·유통·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배지”란 버섯 재배 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물질로서 톱밥, 옥수수 속대, 참나무, 곤충 사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스마트버섯재배”란 버섯 재배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

감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버섯 재배방식을 말한다.

7. “수확 후 배지”란 버섯을 생산·수확하고 남은 배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버섯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버섯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버섯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3. 버섯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버섯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버섯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6. 배지의 안전성 확보, 품질 관리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버섯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균 개발 및 배양기술의 발전
2. 배지의 품질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 개발
3. 스마트버섯재배의 고도화
4. 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원료 개발
5. 수확 후 배지의 자원화 및 재활용 기술 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배지의 품질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지의 원료, 제조 시설 및 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배지에 대해

여 제1항의 품질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배지의 수입·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배지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배지의 품질기준, 적합성 조사의 방법·절차 및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확 후 배지의 재활용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 수확 후 배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확 후 배지를 퇴비, 사료, 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버섯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버섯산업에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버섯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버섯 및 버섯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폐업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수거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절차 등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인증취소 및 정기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품질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취소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급식재료로 납품하기 위하여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생산되는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7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버섯산업과 관련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생산자단체의 설립) ① 버섯산업 종사자는 버섯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버섯 및 버섯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2.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버섯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버섯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버섯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섯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버섯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배지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진열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한 자

제24조(벌칙) 제13조제7항에 따른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